

#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2006 - 제23호 |
|----------|-------------|

제출연월일 2006. 4 18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지방세체납액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고 5만원 이하 주택분 소액재산세 납기 조정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공개요청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 9조의 2)
- 나. 소득할 주민제도 납세지 착오로 인한 수정신고 가능토록 시정기회부여 (안 제22조)
- 다.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토록 단서 신설함(안 제24조의2 제2항제3호)
- 라. 지방세법에서 동일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로 삭제(제25조삭제)
- 마. 차량공매로 인도받은 차량은 명의이전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자동차세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안 제36조제3항)
- 바.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8조제2항)
- 사. 담배소비세 세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저가담배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함(안 제55조)

아.재산세의 중세로서 재산세 납기와 동일하게 단서를 신설함  
(안 제90조제2항제3호)

####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6. 3. 13 ~ 4. 14)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채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채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목중 “수납”을 “현금수납”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호”를 “영 제9조 제2항 제1호”로 하며, 같은조 제2항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를 “영 제9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이·통·반장을 통하여 교부 할 수 있다.

제22조제목중 “수정신고·납부” “수정신고 및 납부”로 하고 같은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서 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1호 가목중 “510원” 을 “641원” 으로 하고, 나목중 “910원” 을 “1,150원”으로 하며, 다목중 “2,600원” 을 “3,270원”으로, 라목중 “650원” 을 “1,150원”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중 “1,040원”을 “1,310원”으로, 제3호중 “650원” 을 “820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가목중 단서·같은조 제2항 본문 및 각호를 각각 삭제 한다.

제90조제2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영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사천시 통반 설치 조례」 및 「사천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통장(이장)·반장을 통하여 교부 할 수 있다.</p> <p>②·③(생략)</p> <p>제22조(수정신고 ·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p> <p>② · ③ (생 략)</p> | <p>제16조의2(-----)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이·통·반장을 통하여 교부 할 수 있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22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제24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생략)<br/>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br/>           1· 2 (생략)<br/>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lt;단서 신설&gt;</p> <p>4· 5 (생략)<br/>           ③ (생략)</p> <p>제25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br/>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 <p>제24조의2(-----) ①(현행과 같음)<br/>           ②-----<br/>           1· 2 (현행과 같음)<br/>           3-----<br/>           -----<br/>           -----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br/>           4· 5 (현행과 같음)<br/>           ③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



| 현행   | 개정안  |
|--|--|
| <p>제36조(납세의무자) ①·② (생략)<br/> <u>&lt;신설&gt;</u></p>   | <p>제36조(-----) ①·② (현행과 같음)<br/> <u>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u></p>  |
| <p>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①·②(생략)<br/> 1·2 (생략)<br/> <u>&lt;신설&gt;</u></p> <p>3.(생략)<br/> ③·④ (생략)</p>  | <p>제38조(-----)①·②(현행과 같음)<br/> 1·2 (현행과 같음)<br/> <u>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u><br/> 4.(제3호와 같음)<br/> ③·④ (현행과 같음)</p>   |
| <p>제5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흡연용의 담배<br/> 가. 제1종 쫄면 20개비당 <u>510원</u>,<br/> <u>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이하인 쫄면은 20개비당 40원</u><br/>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u>910원</u><br/> 다. 제3종 엽권련 50그램당 <u>2,600원</u><br/>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u>650원</u></p> <p>2. 씹는 담배 50그램당 <u>1,040원</u><br/>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u>650원</u></p> | <p>제55조(-----) ①-----<br/> -----.</p> <p>1. -----<br/> 가. ----- <u>641원</u><br/> <u>&lt;단서 삭제&gt;</u></p> <p>나.-----<br/> <u>1,150원</u></p> <p>다.-----<u>3,270원</u><br/> 라.-----<u>1,150원</u></p> <p>2. -----<u>1,310원</u><br/> 3.-----<u>820원</u></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른 각호의 정하는 금액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p> <p>1. 켈런 : 20개비당 100원</p> <p>2. 각련 : 50그램당 100원</p> <p>③ (생략)</p> <p>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생략)</p> <p>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2(생략)</p> <p>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lt;단서 신설&gt;</p> <p>③(생략)</p> | <p>&lt;삭제&gt;</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0조(-----) ①(현행과 같음)</p> <p>②-----<br/>-----.</p> <p>1·2 (현행과 같음)</p> <p>3.-----<br/>-----<br/>-----<br/>-----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p> <p>③(현행과 같음)</p> |

# 관 련 법 령 발 취

## 【지방세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7.11.29>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 1998.12.31>)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 삭제 <1988.4.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9조의2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납발생일 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채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채납액등(이하“채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신설)

##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납부 및 수납방법)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이를 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7.16>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2005.12.31신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2005.12.31신설>

제39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1997.10.1>

②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도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74.12.31]